|  |  |  |
| --- | --- | --- |
|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 관리 잠정규정**(2001년10월9일 노동보장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14호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2015년4월30일 <일부 규정 개정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음.)**제1조**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규율하고 구직자와 구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직업소개업에 종사하는 중외합자·중외합작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제3조** 노동보장행정부서, 대외경제무역행정부서 및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심사비준, 등록, 관리 및 감독검사 업무를 책임진다.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행정부서(이하 "성급 대외경제무역행정부서"로 약칭)의 비준을 득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수권한 기업 주소지의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한 이후 성급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서(이하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라 약칭함)의 비준을 득해야 한다.외국인 단독투자의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외국기업 중국상주대표기구와 중국에 설립된 외국상회는 중국에서 직업소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1.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는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전개한 경영활동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는 아래에 열거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3. 중국과 외국의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직업소개 서비스 제공.
4. 직업 지도·자문 서비스 제공
5. 노동력 시장 정보 수집 및 발표
6. 직업채용상담회 개최
7.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 또는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수권한 지급시(地級市) 급별의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비준한 기타 서비스 항목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가 중국 공민에게 해외취업을 소개하는 경우와 외국기업 중국상주대표기구가 중국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본 규정 제7조~제10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 투자자는 직업소개업에 종사하는 법인이어야 하고 그가 등록한 국가에서 직업소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신용이 양호해야 한다.
3. 설립을 신청하는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중국 투자자는 직업소개 업무 종사 자격을 보유한 법인이어야 하며 신용이 양호해야 한다.
4. 설립 예정인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는 직업소개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명확한 업무범위, 기구정관,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업무에 걸맞는 고정 장소, 사무시설이 있어야 하고 주요 경영자는 직업소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5.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 시 설립 예정 기업주소지의 성급 대외경제무역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대외경제무역행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비준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동의할 경우 중외합자·중외합작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6. 비준을 득한 신청인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수권한 설립 예정 기업주소 소재지의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7.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는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래에 열거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 중국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의 등기등록증명서(복사본)
9. 주요 경영자의 경력증명서(복사본) 및 이력서
10. 예정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직업자격증명서
11. 주소 사용 증명
12. 예정 경영범위 관련 문서
13. 공상영업허가증(부본)
14.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문서
15.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비준을 동의할 경우 직업소개허가증을 발급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6.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투자자 혹은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변경 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의 심사비준 절차에 따라 원 심사비준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 등기 수속을 밟고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변경 비안(備案) 수속을 밟아야 한다.
17.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관리는 <취업 서비스 및 취업 관리 규정>과 외상투자기업 관련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18.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투자자가 중국본토에서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하거나 타이완지역 투자자가 중국본토에서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19. 본 규정은 2001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2001年10月9日劳动保障部、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14号公布 根据2015年4月30日《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修订）**第一条** 为规范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的设立，保障求职者和用人单位的合法权益，根据劳动法、中外合资经营企业法和中外合作经营企业法的有关规定, 制定本规定。**第二条** 设立从事职业介绍的中外合资、中外合作机构应当按照本规定执行。**第三条** 劳动保障行政部门、外经贸行政部门和工商行政管理部门在各自职权范围内负责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的审批、登记、管理和监督检查工作。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应当经省级人民政府外经贸行政部门（以下简称省级外经贸行政部门）批准，到企业住所地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授权的地方工商行政管理局进行登记注册后，由省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部门（以下简称省级劳动保障行政部门）批准。不得设立外商独资职业介绍机构。外国企业常驻中国代表机构和在中国成立的外国商会不得在中国从事职业介绍服务。　　**第四条**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应当依法开展经营活动，其依法开展的经营活动受中国法律保护。　　**第五条**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可以从事下列业务： （一）为中外求职者和用人单位提供职业介绍服务； （二）提供职业指导、咨询服务； （三）收集和发布劳动力市场信息； （四）举办职业招聘洽谈会； （五）经省级劳动保障行政部门或其授权的地市级劳动保障行政部门核准的其他服务项目。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介绍中国公民出境就业和外国企业常驻中国代表机构聘用中方雇员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六条** 申请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应当具备以下条件，并应按本规定第七条至第十条规定的程序办理审批手续：　　（一）申请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的外方投资者应是从事职业介绍的法人，在注册国有开展职业介绍服务的经历，并具有良好信誉；　　（二）申请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的中方投资者应是具有从事职业介绍资格的法人,并具有良好信誉；　　（三）拟设立的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应具有3名以上具备职业介绍资格的专职工作人员，有明确的业务范围、机构章程、管理制度，有与开展业务相适应的固定场所、办公设施，主要经营者应具有从事职业介绍服务工作经历。　　**第七条** 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应当依法向拟设立企业住所地省级外经贸行政部门提出申请，并呈报申请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的有关文件。省级外经贸行政部门应当自接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决定批准或者不批准。予以批准的，发给中外合资、中外合作企业批准证书；不予批准的，应当通知申请者。　　**第八条** 获得批准的申请者,应当依法到拟设立企业住所所在地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授权的地方工商行政管理局申请登记注册，领取营业执照。**第九条**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应当到省级劳动保障行政部门提出申请，并提交下列材料：（一）中、外双方各自的登记注册证明（复印件）；（二）主要经营者的资历证明（复印件）和简历；（三）拟任专职工作人员的简历和职业资格证明；（四）住所使用证明；（五）拟开展经营范围的文件；（六）工商营业执照（副本）； （七）法律、法规规定的其他文件。　　**第十条** 省级劳动保障行政部门应当在接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审核完毕。批准同意的，发给职业介绍许可；不予批准的，应当通知申请者。　　**第十一条**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投资者变更、股权比例发生变化或设立分支机构，应按本规定的审批程序经原审批机关审批同意后，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关变更登记手续，并到劳动保障行政部门办理变更备案手续。　　**第十二条**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的管理适用《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和外商投资企业的有关管理规定。　　**第十三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投资者在内地以及台湾地区投资者在大陆投资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的职业介绍机构，参照本规定执行。　　**第十四条** 本规定自2001年12月1日起施行。 |